

2020년도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안내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목 차

I. 2020년도 신규지원 계획

신규지원 대상과제 개요
추진 일정
제안요청서

II. 신청요건 및 방법

신청요건
신청방법

III.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선정평가 절차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IV. 향후 연구사업 관리

V. 문의처

2020년도 신규지원 계획

1. 신규지원 대상과제 개요

2. 추진 일정

	사업 공고
수	연구책임자 과제 신청 전산입력 마감
목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또는 공문제출 마감
초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초	평가계획 수립 및 과제평가단 구성
중	구두평가 일정 사전안내 및 경쟁률 공지
중	서면평가 실시 및 구두평가 대상과제 발표
중	구두평가
말	예비선정 공고
초	연구개시

※ 공고단위(RFP)별 신청마감시간(18: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공고단위(RFP)별 구두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 정보시스템(www.htdream.kr)’ 에 공지를 확인 요망

※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www.ntis.go.kr)

3. 제안요청서(RFP)

1)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 제안요청서의 통합의료서비스란 의과, 한의과의 의료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적용하거나, 이에 더불어 보완대체의학의 다양한 치료기술(다양한 식이요법, 심신조절요법, 운동요법, 일상생활 관리 프로그램 등)을 포괄하여 같이 적용하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함

신청요건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연구기관의 자격

국 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 조에 따른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
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단체 의료법 제 조제 항제 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06호, 2019.10.8)>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주관 세부 연구책임자의 자격

해당사업 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함

연구과제 수행중 정년 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과제신청전
반드시 사전문의 바람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 요망

신청 제한

신청 제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 조제 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개임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
연구 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
-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

과제구성 요건

세부과제 구성요건

각 연구지원 제안요청서 를 참고하여 세부과제를 구성하되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제 세부 연구책임자를 겸해야 함

세부과제 하위에 다른 세부과제를 구성할 수 없음 위탁과제는 구성 가능

기타 유의사항

중복성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확인하며,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중복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과제평가단에서 심의·판단함

www.ntis.go.kr)

연구시설 장비 도입 및 관리

연구시설 장비 천만원 이상 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를 작성·첨부하여야 함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 장비가 천만원 이상 억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에서 심의 억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에서 심의 붙임 참조

생명윤리법에 따른 심의 의무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붙임 참조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보고 공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 연구성과물 전달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붙임3. 참조)

예상 연구성과에 대한 계량적 명시

과제신청 시 제시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시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시점 총 연구기간 종료시점 까지 예상되는 구체적인 연구성과 즉 논문게재 특허 출원 및 등록 사업화 등을 양식에 따라 계량적으로 명시함

주관·세부책임자 평가위원 등록

신규과제로 선정될 경우,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평가위원 풀에 등록될 예정임

박사후연구원 고용증빙 서류 제출

신규과제로 선정될 경우,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용 계획서 제출시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2. 신청방법

1) 전산입력 안내

전산입력 화면 접속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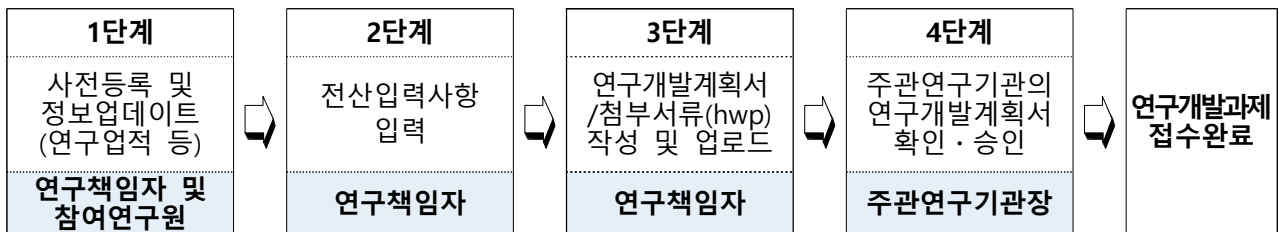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에 접속 후 화면 우측 상단

메뉴에서

지원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신청절차



1단계 사전등록 및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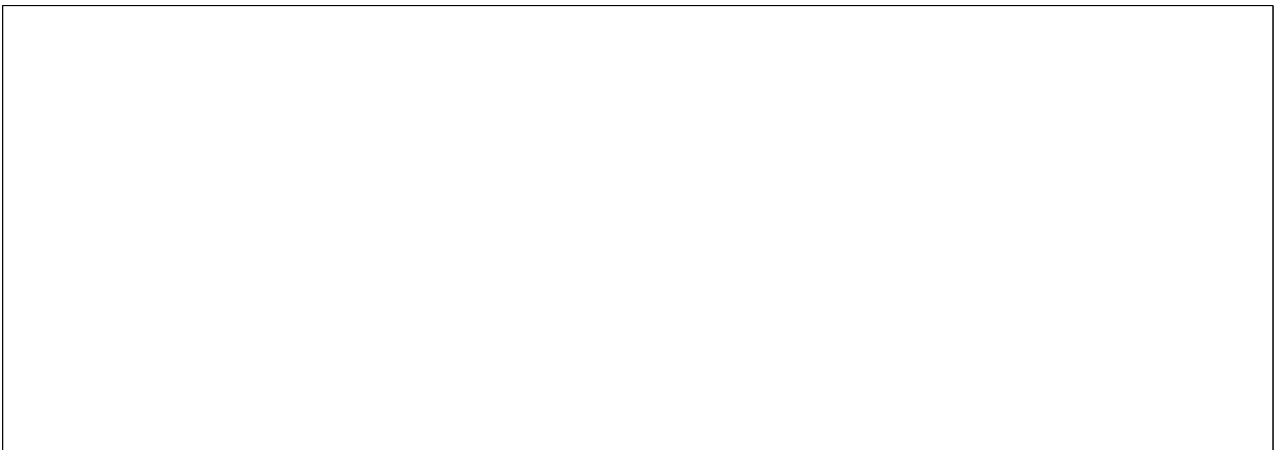
2단계 전산입력 사항 입력

3단계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 서식에 따른 내용 작성 및 파일 업로드

4단계 주관연구기관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인증 과제신청 승인

전산입력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 참조

자료실 매뉴얼



연구개발비 산정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규모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붙임 을 참고하여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를 산정해야 함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2019.12.31.)에 따라 계상하며, 총 연구비 내에 포함됨

참여기업 부담금 세부과제별 산정

- ※ 제안요청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 참여기업 부담금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항목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총 연구개발비 대비 50% 이상	총 연구개발비 대비 40% 이상	총 연구개발비 대비 25% 이상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부담액의 15% 이상	부담액의 13% 이상	부담액의 10% 이상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 허용 비목 및 범위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현물 부담액의 70% 이내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 이내	-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중견 중소기업이 청년인력 만 세 이상 만 세 이하 을 명 이상 신규채용시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이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시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함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양식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관련서식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서면 및 구두평가 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첨부서류 모두 활용하여 평가함

제출기한

공고단위 별 신청마감 시간 접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에 따라 신청마감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지원분야의 신청마감일을 확인 요망

별 구두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에 공지함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평가 절차

<p>사전검토</p> <p>전문기관</p>	<p>과제구성요건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참여 제한 기업부담금 첨부서류 기업부담금 등 검토 사전검토 후 평가대상과제 결정</p>	
<p>서면평가</p> <p>연구개발과제평가단</p>	<p>구두평가 대상과제 선별 예상 선정 과제수에 따라 배수로 선별함 부합성 여부 및 검색결과에 따른 중복성 검토 평가결과 점 점 만점 미만 탈락</p>	
<p>구두평가</p> <p>연구개발과제평가단</p>	<p>평가결과 점 점 만점 미만 탈락 구두평가 불참 시 탈락 일부사업의 경우 구두평가지 토론 공개 평가를 활용할 수 있음 구두평가지 연구개발과제 지원자 간 상호 토론</p>	
<p>종합심의</p> <p>전문위원회</p>	<p>최종점수 경쟁률 정책적 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원과제 결정 지원취소 포함 연구비 산정 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 연구비 결정</p>	
<p>보건복지부 예비선정과제 확정</p>	<p>예비선정 공고</p>	<p>최종선정 통보 및 연구 개시</p>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평가기준

주요 평가항목

-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 를 참고

가감점 부여기준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의 연구개발과제의 가감점 기준·방법 적용
- 최종평가가점 대상자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htdream.kr)에 공지
- 최종평가가점을 제외한 그 외 가점은 해당 RFP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 한함

향후 연구사업 관리

협약변경

연구책임자 변경

주관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주관연구책임자의 건강문제 사망 장기 입원 등 퇴직 부서이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요청이 가능함 이 때 반드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세부연구책임자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연구책임자 변경은 불허함

연구기관 변경

주관연구기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이 소형 개별연구인 경우에만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가능함 이 경우 다른 연구책임자로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세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가능

중간평가 연차 단계 실적 계획의 평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개년도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연차 단계 실적 계획서」를 해당년도 연구개발 종료 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이를 평가하여 차년도 연구지원 여부 및 지원연구비를 확정함

전문기관은 필요시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최종평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대하여 「최종보고서」를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전문기관은 이를 제출 받은 후 「최종보고서」 평가를 시행함

게재 논문 및 특허는 지원과제와 연관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 개발사업 지원과제임을 명기한 경우만 인정

연구성과의 관리 및 평가

연구성과활용 현황의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과제 종료 후 다음 연도부터 연간 매년 월 말일까지 성과활용 실적이 포함된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최장 3년간 제출할 수 있음

연구성과의 홍보

연구개발과제 성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임을 표시하여 발표하여야 함

대중매체를 통하여 발표할 경우 발표내용을 전문기관과 반드시 사전협의
국내 외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특허 출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사표기

HI20C1234

HI20C1234

연구종료 전 후 연구성과 발생 논문게재 특허 출원 등록 등 일로부터 개월 이내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에 수시 입력함

기술료 제도 안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 하여 정함

연구개발목표를 성취한 실용화 과제 중 영리기관에 한해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 하여야 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법 및 감면사항

영리법인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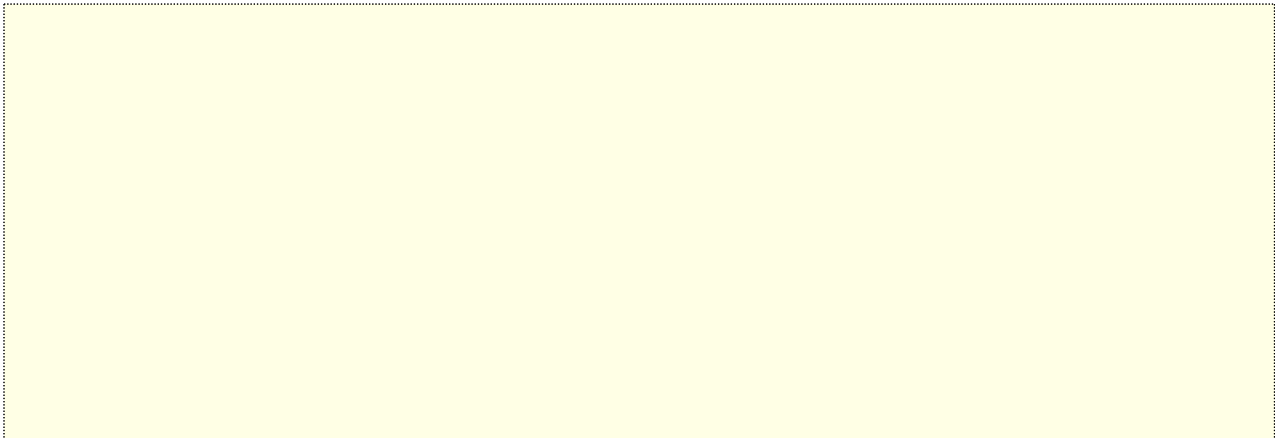
정액기술료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액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납부 시 기술료를 감면 함

경상기술료의 징수기간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까지로 함

기술실시계약일로부터 5년간 청년인력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인력에게 총 지급한 연봉의 50% 이내에서 기술료를 감면 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비율

영리기업 유형	정부납부 정액기술료 납부 비율	정부납부 경상기술료 납부 비율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정부출연금의	매출액의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정부출연금의	매출액의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정부출연금의	매출액의



문의처

홈페이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전문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공고단위 별 담당자 안내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도입 심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를 작성·첨부하여 「과제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억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구축할 경우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위원회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에서 심의 실시 선정과제 별도 안내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 장비 도입과 관련하여 변경사항 금액변경 구축포기 등 발생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전문기관에 보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연구기관의 장은 천만원 이상 또는 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 시설 장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구축일로부터 일 이내 연구개발시설 장비 종합정보시스템 에 등록하여야 하며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의 발급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연구기관의 장은 시설장비 도입 완료 후 연구개발비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 의무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참조)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9. 3. 12.)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교육, 연구기관 또는 병원 등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 받아야 함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 수행 시 연구 수행기관의 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법 주요내용

(목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인간대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①물리적으로 개입, ②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 ③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생명윤리법 제2조제1호)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동법 제2조제12호)

역할 강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해당 기관에 설치 운영을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공용 설치가 어려운 개인연구자 소규모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이 공동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근거 마련

심의대상 연구의 범위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유래물 배아 체세포복제
배아 단성생식배아 배아줄기세포주 등 포함 을 사용하는 연구 만 의 심의 대상

- 단순한 설문조사(출구조사, 여론조사), 기업 활동과 관련된 조사(시장 조사, 제품 만족도 조사) 등 일반화한 지식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조사는 연구에 해당하지 않음

□ 준수 사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의 심의를 받아야 함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 수행기관의 설치 및 등록 의무화

IRB 설치가 어려운 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IRB와 협약을 통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 「 」

·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보고·공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참조)

□ 9대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

국가 사업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각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아래의 해당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 기탁하여야 함
다만,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의 경우 연구자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 시스템(www.htdream.kr)에 등록하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담기관으로 등록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현황>

구분	연구성과물	전담기관	관리대상(등록·기탁 기준)	
등록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paper.kisti.re.kr)	국내외 학술단체 및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논문(전자원문 포함)	
	특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http://www.ripis.or.kr)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nrms.kisti.re.kr)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장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http://www.zeus.go.kr)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취득한 장비 중 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s://www.ntb.kr)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 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생명자원*	생명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http://www.biodata.kr)	유전체 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질 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 정보(유전자 칩, 단백질 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신품종**	국립농업과학원 (http://genebank.rda.go.kr)	생명정보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 관한 정보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ros.or.kr)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s://www.swbank.kr)		
기탁	생명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https://biorp.kribb.re.kr)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https://chembank.org)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 임상연구정보 CRIS(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등록

등록대상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대상자를 직접 관찰하는 코호트 등의 관찰연구 및 중재연구(임상시험) 등 모든 종류의 임상연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임상연구 성과정보의 내실화 및 국내 임상연구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구축된 임상연구정보 서비스(CRIS, <https://cris.nih.go.kr>)에 지원과제와 관련된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연구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성과보고시 임상연구 성과는 CRIS 등록 승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연구에 대한 온라인 등록시스템으로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음
- 2010년 5월 WHO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ICTRP)에 국가대표등록시스템(Primary Registry)으로 가입함에 따라, CRIS등록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본인의 연구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국제학술지에서 요구하는 등록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

·
·
·

□ 임상·유전체 연구데이터 CODA(Clinical & Omics Data Archive) 시스템 등록

등록대상 : 보건복지부장관명의로 지정된 과제에 한하며 연구계획서 제출 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의미하며,
- 해당과제는 제출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및 CODA시스템 (<http://coda.nih.go.kr>)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연구데이터 및 메타정보 등을 등록하여야 함

과제평가 시 CODA시스템 등록실적을 (등록 필증 등) 제출하여야 함

CODA(Clinical & Omics Data Archive) 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지원과제에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국가 자원화 및 공유·활용을 촉진하여 국내 보건의료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 생산성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보건복지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정보시스템으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음

□ 논문 성과의 등록 및 공개

정부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고 성과를 확산하며 실용화를 촉진해야 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성과 중 논문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을 논문의 공개 및 공유 전담기관으로 지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 성과물 중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공식 출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논문의 최종본 전자파일을 질병관리본부 국립의과학지식센터에 제출해야 함

- 연구자는 논문의 최종본 원고 제출 시 논문의 저작권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의 저작권을 출판사 또는 학회 등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논문이 국립보건연구원에 제출되어야 함을 고지하여야 함

※ 출판계약서 또는 저작권 양도계약서 체결 시 예시 문구

(출판사명 또는 학회명)는 저자가 게재 확정된 최종 원고를 국립보건연구원에 제출함으로써, 논문의 공식 출판 12개월 이내에 국립보건연구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보존소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Journal) acknowledges that Author retains the right to provide a copy of the final manuscript to the Korea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KNIH) upon acceptance for Journal publication, for public archiving in KNIH-operating digital repository as soon as possible but no later than 12 months after publication by (Journal).)

붙임 4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구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① 인건비	<p>사용용도</p> <p>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p> <p>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p>
		<p>* *</p>
		<p>계상기준</p> <p>1. 소속 기관 재직중인 기관을 포함 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 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 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p>

직접비	<p style="text-align: center;">① 인건비</p>	<p>해당 과제 참여율</p> <p>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급여총액(기타기관의 경우 급여기준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p> <p>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p> <p>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연도 연구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실제 근무 또는 1년 이상 근무 예정(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 해야함)인 참여연구원에 한하여 계상 가능</p> <p>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는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p> <p>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p> <p>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조제 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됨</p> <p>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p> <p>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연구수행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함</p> <p>제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음</p> <p>가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기관</p> <p>나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p> <p>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 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p>라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p> <p>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 조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에 소속된 연구원인 경우</p> <p>※ 연구중심병원 인건비 허용기준 참조</p> <p>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p>① 사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p>
-----	--	--

직접비	인건비	<p>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등 를 제출한 연구인력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p> <p>가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은 인건비만 계상 집행 가능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계상 집행 불가</p> <p>나 직접비 중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음</p> <p>참고사항</p> <p>○ 진흥원 사전승인 사항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현금부담금 감면 연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 소속 청년인력 포함)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p> <p>※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타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대체 인력 미채용, 참여율 감소 등의 사유로 원래계획 보다 감액한 금액은 반납대상</p> <p>○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한 청년인력을 해고 하거나 채용예정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건비(현금·현물)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기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되, 자발적 퇴사 또는 인건비 집행액(현금·현물)이 민간 현금부담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경우 기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회수)</p> <p>○ 인건비 현물 산정기준 수행기관 급여기준 참여율</p> <p>○ 참여연구원 변경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참여연구원을 변경하는 경우, 「협약변경 처리기준」 붙임 8, 9의 서식을 활용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당월 인건비 지급전까지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변경내역을 등록·관리하고, 관련 문서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함</p>
	② 학생 인건비	<p>사용용도</p> <p>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p> <p>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 조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 이하 출연연구기관 등 이라 한다 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p> <p>출연 연 특정 연 전문 연 에서 학 연 협동과정을 수행 중인 학생연구원 및 대학 원 에 소속되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p> <p>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 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p>

직접비	계상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지정 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총액만 계상 - 연구개발과제별 총액은 연구책임자가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함 ※ 협약 체결 이후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을 변경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지정 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월급여(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 참여기간(개월) × 참여율(%) -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생인건비 미지급 참여는 불가)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의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 -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상 가능 -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총 과제 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 • 연구책임자·학생연구원 간 협의를 통해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100만원 이상, 석사과정은 월180만원 이상, 박사과정은 월250만원 이상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함 </td> </tr> </tbody> </table>	구분	세부내용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지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총액만 계상 - 연구개발과제별 총액은 연구책임자가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함 ※ 협약 체결 이후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을 변경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지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월급여(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 참여기간(개월) × 참여율(%) -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생인건비 미지급 참여는 불가)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의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 -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상 가능 -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총 과제 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 • 연구책임자·학생연구원 간 협의를 통해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100만원 이상, 석사과정은 월180만원 이상, 박사과정은 월250만원 이상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함
	구분	세부내용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지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총액만 계상 - 연구개발과제별 총액은 연구책임자가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함 ※ 협약 체결 이후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을 변경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지정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월급여(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 참여기간(개월) × 참여율(%) -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생인건비 미지급 참여는 불가)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의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 -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상 가능 -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총 과제 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 • 연구책임자·학생연구원 간 협의를 통해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100만원 이상, 석사과정은 월180만원 이상, 박사과정은 월250만원 이상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함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사항</p> <p>○ 연구기관 필수 이행사항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하여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원 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후 정산시 제출</p>							
사용용도	<p>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함) 2개월 이전에</p>						

직접비	<p>③ 연구 시설 · 장비비</p>	<p>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구입·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 포함)</p> <p>2. 연구시설·장비 임차·유지보수·이전설치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경비,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p> <p>3. 연구시설·장비 개발경비 : 연구개발성가로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장비의 개발 경비</p> <p>4. 연구인프라 조성 시설·장비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및 장비 구입·설치비</p> <p>계상기준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p> <p>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에서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p> <p>* 사용용도 제2호에 한하여 직접비(미지급인건비 및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하여 집행·관리</p>
	<p>③ 연구 시설 · 장비비</p>	<p>참고사항</p> <p>○ 천만원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하 같음 이상 억원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하 같음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구축타당성 검토를 위한 보건복지부 진흥원 심의 진행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p> <p>○ 천만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집행가능하나 집행시 해당과제와의 합목적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 기관 결재문서 등 를 구비하여야 함</p> <p>○ 해당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 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국가연구시설 장비포털(ZEUS) 또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정산 시 해당 연구장비의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 등록증」 첨부</p> <p>○ 진흥원 사전승인 사항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p>

		<p>구매하려는 경우</p> <p>※ 새로 구입 또는 변경 구입하는 경우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 전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포함한 시설·장비의 도입(검수·설치포함) 및 연구비 집행 완료(단, 최종(단계포함) 연도의 경우 종료 2개월 이내 도입(검수·설치포함) 완료)</p> <p>-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당해연도에 구매하지 않으려는 경우. 다만, 원래 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함</p> <p>※ 다음연도 이월 구매시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포함한 시설·장비의 도입(검수·설치포함), 연구비 집행은 다음연도 연구기간에 이행 완료(단, 최종(단계포함) 연도의 경우 이월 구매 불가)</p> <p>○ 현물 산정기준 구입한지 년 이내에 한해 취득원가의 이내로 산정하며 잔여내용 연수가 당해연도 연구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p>
직접비	④ 연구 활동비	<p>【사용용도】</p> <p>여비 국내외 출장여비</p> <p>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 위탁정산 수수료 포함 등</p> <p>기술정보활동비 전문가 활용비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로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일용직 활용비 등</p> <p>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 조제 호부터 제 의 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 조제 호부터 제 의 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 부서를 의미함</p> <p>기술도입비는 연구계획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해당 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아래 기준에 의해 산정 가능</p> <p>현물산정시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년 이내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매매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시에 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선싱 전용 통상 실시 포함 기 지급된 금액으로 과제 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선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금액 <p>현금계상시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정액기술료 착수기본금 선급금 등에 한하며</p>

	<p>④ 연구 활동비</p>	<p>경상기술료는 제외</p> <p>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보건의료분야 임상시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속과제의 임상시험의 경우 피험자모집 광고료 임상시험 보험료는 해당과제의 최종연도 단계 최종연도 포함 종료일내에서 계약 가능</p> <p>과제관리비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p> <p>특허정보 조사비 등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p> <p>7. 연구과제 운영경비 :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p> <p>8. 기기 및 SW구입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함)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 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기기를 말하며,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 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함)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p> <p>9. 연구인프라 조성 사업관리 추진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p>
직접비	<p>④ 연구 활동비</p>	<p>계상기준</p> <p>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함.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됨 가.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p> <p>2. 사용 용도 제7호*의 연구활동비를 본 지침 8-1.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2). 가.목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5 퍼센트 이내이며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5%초과 계상 가능하나 5%초과 집행 시 정산 실시</p> <p>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p> <p>4.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해당하는 연구활동비 계상 및 사용 불가</p>
직접비		

위탁정산 수수료 주관과제만 계상

연구개발비 규모 당해연도 현금총액 정부출연금 민간부담 현금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0.5억 미만	600천원	5억 이상 10억 미만	1,647천원
0.5억 이상 1억 미만	987천원	10억 이상 30억 미만	1,845천원
1억 이상 3억 미만	1,185천원	30억 이상	2,043천원
3억 이상 5억 미만	1,515천원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전년도 이월액 제외 기준으로 정산수수료 산정
 정산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세부과제 위탁과제 제외 수에 따른 가산금
 주관 과제 단독과제 가산금 없음
 세부 개 기관 과제 수수료의 퍼센트 가산
 세부 개 기관 과제 이상 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퍼센트 가산
 사업단의 경우 총괄과제별로 정산수수료 책정하고 세부과제 수에 따른 가산금 책정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기관이 수행하는 주관 세부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산수수료 산정 시 제외

공공요금은 총원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

사용용도

재료비·전산처리비 시약 ·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시제품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

【계상기준】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2.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
 3.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4.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계정대체 가능)
-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 가능

참고사항

- 현물 산정기준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생산·판매중인 시약 및 재료비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

5
연구
재료비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기준】

- 보건복지부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6
연구
수당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예산대비 증액은 불가하며, 연구수당의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회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 직접비 집행비율 : 전년도 이월금 사용금액을 포함한 총 집행액(연구수당 집행액 제외)을 해당연도 협약금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 연구자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단, 참여연구원이 없는 연구책임자 단독 연구개발과제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지급방법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
	<p>7 위탁 연구 개발비</p>	<p>【사용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p>계상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비와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인건비는 미지급인건비 제외의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원 사전승인 사항 원래계획 보다 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미지급인건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사항 이외의 위탁연구개발비 변경 시에는 「협약변경 처리기준」 붙임 6의 서식을 작성하여 진흥원에 보고 ○ 위탁연구기관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동 지침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 또한 위탁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세부)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관리, 연구비 반납에 관한 책임을 가짐
		<p>【사용용도】</p> <p>1. 인력지원비</p> <p>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 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나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력성과급</p> <p>연구지원비</p>

간접비	⑧ 간접비	<p>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p> <p>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p> <p>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하는 경비</p> <p>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 교육 및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로 임치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p> <p>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 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 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p> <p>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과학기술기본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 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p> <p>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역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비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성과활용지원비</p> <p>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p> <p>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 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 운영 연구노트 교육 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p> <p>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p> <p>【계상기준】</p> <p>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 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p>
-----	----------	---

간접비	<p>8 간접비</p>	<p>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 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p> <p>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 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 의 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p> <p>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 에 대해서는 직접비 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 의 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퍼센트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p> <p>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 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p> <p>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p> <p>4.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p> <p>기술창업 출연 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p> <p>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p> <p>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역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조제 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p> <p>참고사항</p> <p>○ 간접비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예산대비 증액은 불가하며 직접비 집행비율이 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에서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회수</p> <p style="padding-left: 20px;">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p> <p>※ 직접비 집행비율 : 전년도 이월금 사용금액을 포함한 총 집행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p> <p>○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기관 명의로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보건복지부 지원 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p>
-----	------------------	--